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 4. 13)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 제안이유

- 지하부분 누수에 따른 업종별요율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도 사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3자녀 이상 가구를 추가하며,
- 특1등급 관광호텔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하 누수가 발생한 경우 4개월 평균사용량의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수도사용요금 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함(안 제30조제6항)
- 나. 수도사용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호텔을 추가 함(안 제38조)

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수도사용 요금 또는 그 밖의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 및 제47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감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 경기도 내 10여개 시군에서 이미 감면 조례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감면대상자 선정은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한 내용임.
○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 우리시 관내에 보훈대상자는 약 6,800여 세대로 일시에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후에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해진 날(다음부터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수도물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

2. 급수를 중지한 경우

3.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을 해제한 경우

4. 시장이 수시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수도물 사용량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같은 호(戶) 또는 같은 주소에서 같은 업종의 2개 이상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도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⑤ 같은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는 요금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요금자동납부 수용가
4. 가정용 수용가 중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5. 요금 전자고지 및 휴대폰고지 참여 수용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9.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호텔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감면액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수수료·분담금 및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이의신청)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요금·수수료 및 분담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48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